

	<h2 style="margin: 0;">대학자체평가규정</h2>	규정번호	3-1-10
		제정일자	2010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5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 (성과혁신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안산대학교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.)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5조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 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평가의 종류 및 주기) 평가의 종류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대학의 비전 및 교육목표 : 5년마다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: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3. 행정부서 및 학과 평가 :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2장 평가기구

제7조(평가주관부서) ① 평가 업무의 전반은 전략기획처가 담당하며, 본 규정 제9조에 따라서 성과혁신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
2. 자체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3.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 총괄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,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내·외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교무위원의 경우에는 보직의 임기로 하고,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기본방향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2. 자체평가 영역, 지표,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- 3.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- 4. 자체평가 결과의 심의,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성과혁신센터) ① 자체평가의 실무추진을 위하여 성과혁신센터를 둔다.

② 성과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 지급)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내·외부위원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

제12조(평가계획 수립) 성과혁신센터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(부)에 통지한다.

제13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(부)는 성과혁신센터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.

제14조(평가실시) ① 성과혁신센터는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한다.

② 성과혁신센터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5조(실사) 성과혁신센터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 부서 및 학과(부)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평가결과 보고) 전략기획처장은 작성한 평가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(부)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제17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제6조 2호의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대학발전계획에 반영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